



(2021.1.16. 시행일 기준)

#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

순번	산업안전보건법	주요 내용	벌칙
1	제14조(이사회 보고 및 승인등)	▷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공사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	1,000만 원 이하 과태료
2	제57조(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)	▷ 산업재해 발생 보고 ※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- 사망 시 : 지체 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(고용노동부 관할지청) -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 : 관할지청에 1달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	· 은폐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· 보고 : 1,500만 원 이하 과태료
3	제34조(법령요지게시)	▷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	500만 원 이하 과태료
4	제15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)	▷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	500만 원 이하 과태료
5	제16조(관리감독자) 제17조(안전관리자) 제18조(보건관리자) 제19조(안전보건담당자)	▷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선임(대행기관 위탁 가능) ▷ 작업반장, 생산과장·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케 해야 함	각 500만 원 이하 과태료
6	제38조(안전조치)	▷ 위험기계·기구, 설비 위험 방지 : 프레스·리프트·크레인·동근톱 등 방호조치 ▷ 전기·열·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: 접지, 누전차단기 설치 등 ▷ 추락·붕괴·낙하·비레 위험 방지 : 안전난간 설치, 안전모·안전벨트 착용 등 ▷ 굴착·하역·벌목·조작·운반·해체·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: 작업계획서 작성 (중량물 취급, 트럭·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) 등	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
7	제39조(보건조치)	▷ 분진, 밀폐공간작업, 사무실오염, 소음 및 진동, 이상기압, 온·습도, 방사선, 근골격계부담 작업, 화학물질 등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 - 방독마스크·방진마스크·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, 국소배기장치 설치, 휴게시설,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	
8	제63조(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)	▷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,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▷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	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(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)
9	제66조(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)	▷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	500만 원 이하 과태료
10	제58조(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)	▷ 도급작업, 수은·납·카드뮴 제련·주입·가공·가열 작업 도급금지 ▷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도급금지	10억 원 이하의 과징금
11	제29조(안전·보건 교육)	▷ 정기안전보건교육 : 비사무직(6시간/분기), 사무직(3시간/분기) ▷ 채용 시 교육 : 일용직(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, 건설업 외(8시간)) ▷ 특별교육 : 일용직(2시간 이상, 건설업 외(16시간 이상)) ▷ 관리감독자 교육 : 전 업종,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, 연간 16시간	500만 원 이하 과태료
12	제80조(유해·위험기계·기구 등의 방호조치)	▷ 유해·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프레스·전단기·가스집합용접장치·크레인·승강기·리프트·용접기·압력용기·보일러·롤러기·연삭기·목재 가공용 동근톱·동력식 수동대패·산업용로봇 등은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는 사용하면 안 됨	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 벌금
13	제84조(안전인증)	▷ 유해·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프레스·전단기·절곡기·크레인·리프트·압력용기·롤러기·사출성형기·고소작업대·곤돌라·기계톱(이동식) 등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로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(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 함)	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 벌금
14	제93조(안전검사)	▷ 유해·위험기계 등의 안전검사 실시 프레스·전단기·크레인(2톤 이상)·리프트·압력용기·곤돌라·국소배기장치·원심기·화학설비·건조설비·롤러기·사출성형기 등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	1,000만 원 이하 과태료
15	제110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)	▷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"물질안전보건자료"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-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별도제출	500만 원 이하 과태료
16	제112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)	▷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시에는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 사전 승인시 비공개 타당성, 대체자료의 적합성, MSDS의 적정성 확인	500만 원 이하 과태료
17	제118조(유해·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)	▷ 유해 화학물질 제조·사용 시 노동부관할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디클로로벤젠·알파나프틸아민·크롬산아연·베릴륨·비소 등 허가대상물질	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 원 이하 벌금
18	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, 비치 등)	▷ 화학물질 등 사용시, 저장·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게시 ▷ 화학물질의 용기·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	500만 원 이하 과태료
19	제125조(작업환경측정)	▷ 소음(80 dB 이상), 화학물질, 분진,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- 반기 1회/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회	1,000만 원 이하 과태료
20	제129조(일반건강진단) 제130조(특수건강진단 등)	▷ 일반건강진단-사무직은 2년에 1회,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▷ 특수건강진단-소음·분진·화학물질·고열 등 노출 근로자(6개월~2년에 1회) ▷ 배치전건강진단-신규채용, 작업전환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	1,000만 원 이하 과태료
21	제164조(서류의 보존)	▷ 산업재해 발생기록, 관리책임자·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, 석면조사 서류, 작업환경측정·건강진단 서류 등(3~30년간 보관)	300만원 이하 과태료

\* 범위반에 따른 각종 벌칙규정은 동법 제167조~175조 참조